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혼인기간 5년 이상 배우자의 재혼 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유지 〉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03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혼인기간 5년 이상 배우자의 재혼 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유지	3

I. 제안경위

2025년 9월 16일 김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9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서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배우자 일방의 노력이나 기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 협업의 결과인 점,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서 분할연금의 경우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점,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재혼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부양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재혼을 이유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분할연금의 수급자격과 같이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별 후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제2호).

Ⅲ. 검토의견

1. 혼인기간 5년 이상 배우자의 재혼 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유지(안 제64조제1항제2호)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배우자와 관련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한함)가 재혼한 때(사실혼 포함)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여,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이 유지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64조제1항제2호).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1. (생략) 2.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한한다)가 재혼한 때(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

3. ~ 7. (생 략) ② · ③ (생 략)	<u>합한다)</u>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재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62조¹⁾에서 규정하는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사망 당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그가 생전에 부양하고 있던 가족들을 생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험급여임.

구체적으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²⁾은 “근로자 사망당시 생계를 갈

-
- 1)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이하던”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④ 손자·손녀, ⑤ 조부모, ⑥ 형제자매 순서로 우선권이 있으며, 선순위자의 수급자격이 상실된 경우 후순위자에게 수급권이 이전됨.³⁾

현행법 제64조제1항제2호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배우자가 재혼을 하면 수급권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배우자가 사망한 뒤 재혼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2. 12. 18., 2017. 12. 19., 2018. 6. 12., 2020. 5. 26., 2023. 8. 8.>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2의2.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애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3)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4. 자녀가 25세가 된 때

4의2. 손자녀가 25세가 된 때

4의3.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5.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6.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7.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②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라 한다)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4) 시사인, 사별 후 재혼 금지하는 연금법? [세상에 이런 법이], 이지연, 2025.9.20.,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408>

이에 개정안은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생활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유족연금 수령자의 혼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 등 타 유족연금제도의 경우 배우자 재혼시 수급권 상실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법」 제75조⁵⁾, 「공무원연금법」 제57조⁶⁾ 및 「군인연금법」 제32조⁷⁾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경우에도 연금 수급권을 가진

5) 「국민연금법」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4.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5. 삭제

②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6) 「공무원연금법」 제57조(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로 퇴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애 상태가 해소되었을 때

②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7) 「군인연금법」 제32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그 수급권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분할연금과 다른 유족연금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의 설계로 보임.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에 관하여,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중 획득한 연금의 수급권을 이혼 시 분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적 성격이 강한 급여인 반면,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로부터 유족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급여라고 보아,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⁸⁾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경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4.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5.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로 인하여 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애 정도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8) 2022.8.31.선고, 2019헌가31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제1항제2호 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연금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하여 이혼 시 이를 정산·분할할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유족연금과는 그 제도의 목적이나 취지가 서로 다르다. …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중에 획득한 연금의 수급권을 이혼 시 분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적 성격이 강한 급여이다. …그러나 배우자가 일단 수급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분할연금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면, 형벌 등에 따른 사유로 공무원의 퇴직연금액(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에 공무원에게 연금수급권의 소멸·정지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배우자의 재혼 또한 분할연금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에 반해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로부터 유족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급여이다. … 이처럼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은 서로 다른 법적 성격과 목적을 가지고, 연금의 수급요건, 기간, 수급액 등에 차이를 두고 있다.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 당시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는 부양적 성격의 급여인바, 심판대상조항이 배우자의 혼인기간 동안의 연금형성에 대한 기여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이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양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유족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되는데,⁹⁾ 개정안 내용처럼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유지할 경우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녀, 노부모 등 다른 후순위 수급자격자는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지 못하여 이들의 생계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유족연금 수령자의 재혼 시 연금수급권이 상실되는지에 관한 외국의 사례(참고자료 1)를 보면, 독일 및 일본 등은 유족연금이 정지되고, 프랑스는 유족연금 중단되나 연금의 3년치 일시금이 지급되며, 이탈리아는 유족연금이 정지되고 2년의 연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보임.

고용노동부는 ① 유족보상연금은 부양 상실상태가 해소되면 제도 취지상 당연히 수급자격이 소멸되는 것이 타당하고, ② 배우자의 재혼은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상실 상태가 해소된 경우로 이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③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도 연금 수급권을 가진 배우자가 재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②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라 한다)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혼하는 경우 그 수급권이 상실되므로 타 제도와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0

참고 1

유족급여 지급 관련 배우자 재혼시 수급권 보호 해외사례

구분	배우자 연금(Spouse's pension)	배우자 재혼시 유족급여 중단여부
벨기에	· 사망자 사망적용소득의 30% 지급 · 최소/최대연간소득 있음	· 재혼 시 연금 중단
덴마크	· 연간소득의 30% · 배우자, 적어도 2년이상 사망자와 살았던 동거 파트너에게 10년 동안 지급 · 연 최대급여액 있음	· 재혼 시 연금 지급 유지(10년 한정)
프랑스	· 직전 12개월간 평균소득의 40% 지급 · 법률상 배우자, 연대민사계약(PACS)의 대상자 · 부양금(alimony)을 받는 이혼한/헤어진 배우자는 부양금과 같은 연금을 받으나, 직전 12개월간 평균소득의 20%를 초과할 수는 없음 · 고령/장해유족의 경우 연금의 20%를 추가적으로 지급. 이때 유족은 55세 이상 또는 장해평가 50% 이상	· 연금은 재혼시 중단되고 연금의 3년치 일시금이 지불됨 · 그러나 유족이 고아연금을 받는 1명 이상의 자녀를 돌보고 있다면 유족연금은 고아연금이 중단될 때까지 지급됨
슬로베니아	· 사망자가 받았던 조기, 노령, 장해연금의 70%. 유족이 2명일 경우 80%, 유족이 3명일 경우 90%, 4명이상일 경우 100%	· 배우자가 60세 되기 전에 재혼하였을 경우 연금은 중단
독일	· 24개월동안 소득의 30% 지급 · 사망직후 3개월동안은 소득의 66.7% 지급. 그뒤 배우자가 47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1명 이상의 자녀를 돌보는 경우 40% 지급	· 재혼시 연금 중단
스페인	· 기준소득의 52% · 부양자녀가 있고 수입이 정부기준 이하라면 70% · 최소/최고 월소득 있음 · 배우자가 이혼했거나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다면 사망자와 살았던 기간에 근거하여 연금을 축소 지급	· 재혼시 연금 중단, 일부 소득, 연령, 장애의 경우에는 부분/완전 연금이 계속 지급될 수 있음

터키	· 장해연금의 50% · 배우자에게 자녀가 없으면서 취업한 상태가 아니거나 연금수급자가 아닌 경우 75%	· 재혼시 중단
멕시코	· 사망자 장해연금의 90% · 법률상 배우자 또는 파트너 수급 가능	·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새로운 파트너와 동거하게 되면 연금은 중단되고 일시금이 지급됨 · 재혼 정착금: 3년치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칠레	· 장해연금의 50% · 44세 초과 여성 배우자이거나(장해가 있거나 자녀를 돌보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장해가 있는 남성 배우자인 경우 지급 · 자격있는 자녀가 없다면 60% 지급 · 45세 미만의 여성 배우자는 1년간 연금 지급. 아이를 돌보는 여성 배우자가 이 1년동안 45세에 도달할 경우 평생 지급 · 최소연금 있음	· 재혼시 연금중단, 2년치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일본	· 남성 배우자의 경우 60세 이상 또는 일정 장애에 해당하거나 55세 이상 60세 미만 시 수급자격을 가짐 · 유족수에 따라 급여기초일액의 153일본~245 일본을 수급권자에게 지급	· 재혼시 연금 중단
이탈리아	· 사망자 평균소득액의 50% · 재혼 시 2년의 연금액 일시금으로 지급	· 재혼시 연금 중단
오스트리아	· 60세 이상 여성 유족배우자나 65세 이상 남성 유족 배우자는 평가기초액의 40%, 그 외 연령대 배우자는 평가기초액의 20% · 재혼시 월 연금액의 35배 일시금 지급 · 재혼 후 다시 이혼(혹은 사망)하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전 사망한 배우자에 관한 유족 연금 재 수급 가능	· 재혼시 연금 중단